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293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2.

발의자 : 서영교 · 윤준병 · 위성곤
박희승 · 임오경 · 양부남
이성윤 · 박홍배 · 김태선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, 수도권과 밀접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,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· 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,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,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.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, 지역 인프라 확충,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

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
것임(안 제60조제2항, 제61조제3항,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1조제3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5조의6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
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
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
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
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
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
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
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
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
입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
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
의 감면) ① 「사회적기업 육
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202
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
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
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
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
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
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
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
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
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
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5조의6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
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
의 감면) ① -----
----- 202

| | |
|--|-----------------|
| 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| ----- -----. |
| ③ ~ ⑧ (생 략) |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|